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0 호

###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에 관항 사항은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뉴딜정책 팀장이 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계룡시 내로 이전·신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관계 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제14조 규정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1 호

###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를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중에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⑩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2 호

###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을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인중”을 “5인중”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3 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4 호

###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표하고”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한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 이상을”을 “5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낸다”를 “납부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낼”을 “납부할”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5 호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 지원하며, 제7호”를 “제3호까지 지원  
하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제7호를 제4호로 한다.

#### 2. 교육활동지원비

제8조제2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6 호

###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교육부장 1명, 홍보부장 1명을 둔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교육

부장(이하 “교육부장”이라 한다) 및 홍보부장(이하 “홍보부장”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면·동 단위 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동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면·동 방재단 지단장은 해당 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④ 교육부장은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⑤ 홍보부장은 재난관련 주민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교육부장, 홍보부장, 면·동 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간사, 교육부장, 홍보부장

2. 면·동 지단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계룡시 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장

[별지 제2호서식]

## 계룡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계룡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룡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계룡시장 귀하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 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면(동)대표	성명	(인)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룡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면동 지단장이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2.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3.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활동계획서

[계룡시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 출 입 증

<b>출 입 증</b>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1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사 진 (3×4cm)</p> </div>
<b>계룡시 자율방재단</b>

← 5.5cm →

<b>자율방재단원증</b>
<p>NO. 000                      혈액형 O(RH+)형</p> <p>성    명 : ○   ○   ○</p> <p>생년월일 : . . ( )</p> <p>소    속 :</p> <p>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룡시장 (인)</p>

↑  
7.7  
c  
m  
↓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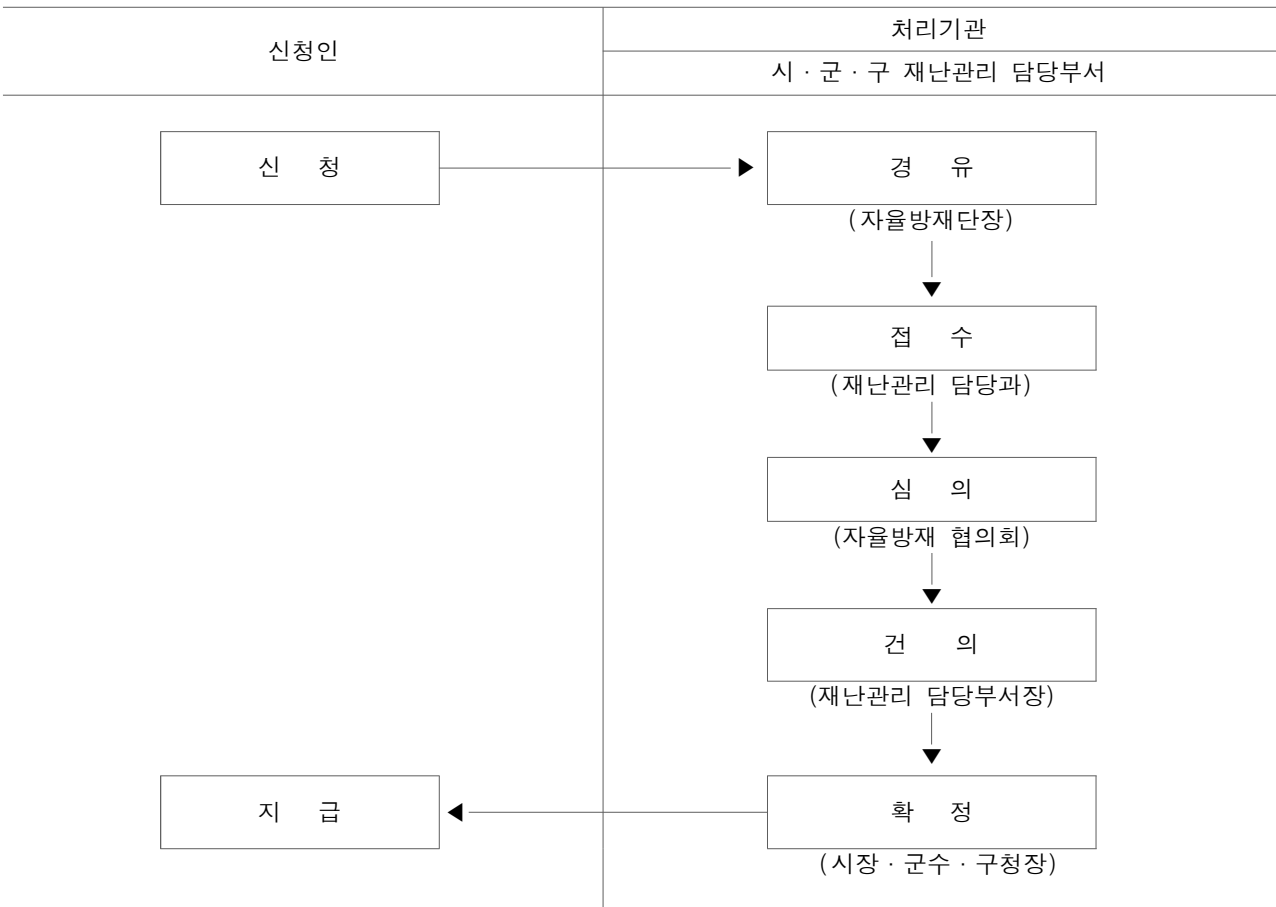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계룡시의회에서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7 호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조성한 향적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 3.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 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오손(汚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이용하는 경우
3.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자에게 원상 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험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산 치 프 그 립 유 로 램	2시간 기준 (1인)	5,0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li> <li>-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li> </ul>
	4시간 기준 (1인)	10,000원	8,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룡시민 체험료 감면은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일행이 계룡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li> <li>-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li> </ul>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8 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69 호

###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계룡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한 계룡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70 호

###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계룡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71 호

###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 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휴대폰)
	주소	
기관 (업체명)		
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5일 )	
확인사항	1) [개인정보] 기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기기상태] 이상 없음 확인 3)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교부 4) [점검결과] 기기 반납 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여부 제출 5) 기기 반납 연체 시 : 추가 대여 불가 6) 본 제품은 관할 계룡시 공공물품으로 사용자 부주의로 분실 및 파손 시 사용자가 수리비 전액 부담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b>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업무</b>	성명, 연락처(휴대폰), 주소	<b>동意的 날로부터 1년간</b>
1)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불법촬영 기기 대여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집.이용.제공.파기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불법촬영 기기 대여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의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계 룡 시 장

2021년 11월 10일

계룡시 조례 제 872 호

###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룡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

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계룡시의회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 등) ① 협회회의 위원장은 협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회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현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현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현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현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현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고시 제2021-111호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계 룡 시 장

###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407-1	계룡시 엄사면 향한매봉1길 23	2021.11.10.	2019.09.27.	향한매봉길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 부여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164-3	계룡시 엄사면 도곡3길 24	2021.11.10.	2009.05.27.	도곡로에서 세 번째로 분기 되는 도로

###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변경(직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365	계룡시 엄사면 도곡번영3길 23	2021.11.10.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직권변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371	계룡시 엄사면 도곡번영3길 29	2021.11.10.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373	계룡시 엄사면 도곡번영3길 31	2021.11.1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http://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계룡시 고시 제2021-112호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계 룡 시 장

1. 고 시 일 : 2021. 11. 10.(수)
2. 변경내용 : 도로구간 시작지점 (광석향한길) 변경(도로구간 위치정확도 개선)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조서 및 도면)
4. 도로구간 등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042-840-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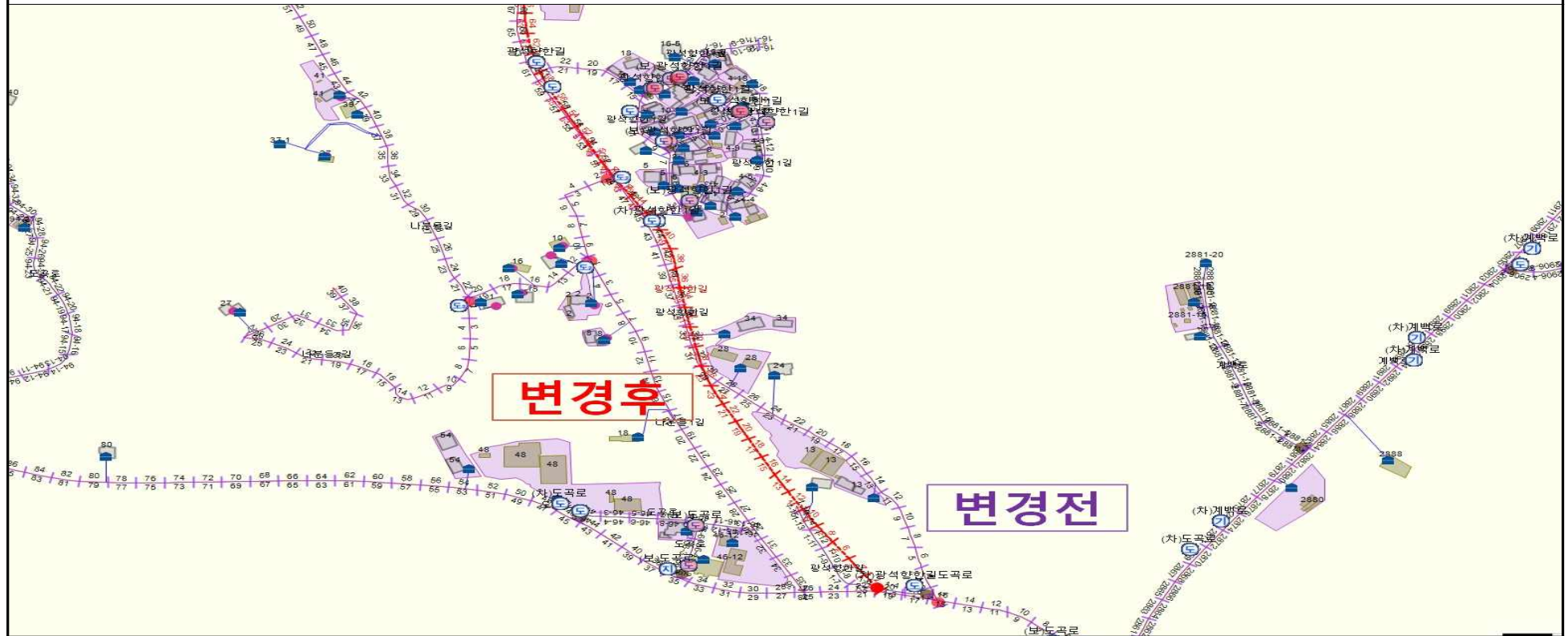
-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2. 도로구간 변경 도면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변경 전	광석향한길	엄사면 광석리 408-1	엄사면 향한리 600-1	도면 참조	2,411	3	20	1	242	-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변경	
변경 후	광석향한길	엄사면 광석리 408-22	엄사면 향한리 600-1	도면 참조	2,412	3	20	1	242			

현 황 도 면



##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1-72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계 룡 시 장

점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자 (성 명)	황현식	주소	대전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소하천명		배울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395-1		
	면적	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1. 1. ~ 2026. 10. 31.		
	목적 및 사유	통신전주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생략)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1-74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계 룡 시 장

점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계룡시		
	대표자 (성 명)	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	주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소하천명		상원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계룡시 두마면 용동리 652-61번지 일원		
	면적	1,062.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로부터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생략)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계룡시 공고 제2021-74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4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9-80(2019. 8. 3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호)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1. 11. 10.

### 계 룡 시 장

1. 사업 시행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남선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호)사업
  - 명칭: 공군기상단삼거리~괴목정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 개요
  - 실시계획인가 면적 : 51,269㎡
  - 도로구분 :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 규 모 : L=1,830m, B=24.5m (4차로)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 성명: 계룡시장(건설교통과장)
5. 사업기간 : 2019. 8. 30. ~ 2021. 4. 2.
6. 관계도서 : 게재생략